



##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고시개정안 3건 행정예고(4월 7일~27일)
- 폐아이씨 트레이 및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순환자원 수입규제 완화 등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 및 쌀겨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 개별 배출자의 신청에 의해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순환자원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25년 기준 39종 폐기물 1,815건 인정)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어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로 폐출되는 ‘아이씨 트레이’는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 중이나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배출자 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 순환자원 인정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유해물질 함유여부 분석, 거래내역 확인, 현장실사 등을 거쳐 60일(60일 추가 연장 가능)내 인정여부 심사, 인정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추후 재인정 필요

이와 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폐석재는 산지 등의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 자투리돌 등의 폐기물로서,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석재를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을 돕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를 한다.

그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석탄재, 폐섬유, 폐타이어 등 4종의 폐기물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폐기물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순환자원에 대한 순환이용의 용도 및 방법, 폐기물의 수입제한 예외사항,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등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http://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순환자원 지정시 달라지는 내용.  
 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개요.  
 3.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4 관련 사진.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이정래 (044-201-7427)

# 붙임1

## 순환자원 지정 시 달라지는 내용

구 분	면제되는 폐기물 주요규제	근거조문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li> <li>-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관할 시·군·구청</li> <li>- (신고내용)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배출 및 처리계획 등</li> </ul>	-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수집·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li> <li>- (대상)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li> <li>◦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li> <li>- (대상)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경우</li> </ul> <p>※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p>	-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 - 법 제46조제1항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보관기한</li> <li>- (배출자)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폐기물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 불가</li> <li>- (처리업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보관량</th> <th>처리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재활용업자</td> <td>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td> <td>60일 이내</td> </tr> <tr> <td>폐기물처분업자 등</td> <td>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td> <td>30일 이내</td> </tr> </tbody> </table>	구 분	보관량	처리기한	재활용업자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	60일 이내	폐기물처분업자 등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다목3 -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구 분	보관량	처리기한								
	재활용업자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	60일 이내								
폐기물처분업자 등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li> <li>-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li> </ul>	- 시행령 제29조제2항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업 허가</li> <li>-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li> <li>◦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li> <li>-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li> <li>◦ 폐기물처리 신고</li> <li>-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을 선별·압축·감용·절단 또는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li> </ul> <p>※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p>	- 법 제25조, 제29조, 제46조									
인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입력</li> <li>- (대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자</li> <li>- (시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할 때 마다</li> <li>- (입력내용) 인계·인수 폐기물의 종류와 양, 재활용방법 등</li> <li>- (입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li> </ul>	- 법 제18조제3항 - 시행규칙 별표 6									

□ **순환자원 지정품목(10종)**

-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및쌀겨

□ **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등**

품 목	세부기준
폐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3~5%이하), 압축, 종류별 분리</li> <li>◦ (활용) 신문지, 휴지, 골판지 박스 등 종이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고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2%이하), 절단·압축, 종류별 분리</li> <li>◦ (활용) 제철소, 제강소 등 금속성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폐금속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2%이하), 압축, 재질별 분리</li> <li>◦ (활용) 금속캔 제조 업체에 금속캔류 제품의 재활용 원료로 납품</li> </ul>
알루미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2%이하), 절단·압축 필요</li> <li>◦ (활용) 제강소 등에 비철금속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2%이하), 절단·압축시설 필수</li> <li>◦ (활용) 제강소 등에 비철금속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전기차 폐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 침수·변형 등이 없고, 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등 위험 없는 경우</li> <li>◦ (이용용도) 본래 용도로 재사용,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li> <li>◦ (방법·기준) 본래 용도로 재사용,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li> <li>※ (기타) 순환자원 이력관리대장 기록 및 3년간 보존,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방법 및 운반방법 준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안전 요구사항 준수, 파·분쇄 및 분해 금지</li> <li>◦ (활용) 캠핑용 배터리, ESS·UPS 배터리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 제조 용도로 사용</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가 이물질 제거(5%이하), 색상별 선별, 파쇄·분쇄</li> <li>◦ (활용) 판유리, 유리병 등 유리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폐식용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 제조용도</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 등이 분리·증류·추출·여과 등 시설 승인 또는 신고</li> <li>◦ (활용) 석유화학제품(바이오디젤 등)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커피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다른 용도로 재사용, 제품 제조, 농업이나 토질개선 등</li> <li>◦ (방법·기준) 배출자, 처리업자 등이 유출·비산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소 보관</li> <li>◦ (활용) 비료, 축사갈래, 활성탄 등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왕겨 및 쌀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용도) 다른 용도로 재사용, 제품 제조, 농업이나 토질개선</li> <li>◦ (방법·기준) 양곡가공법 신고자가 밀폐된 장소 보관, 용기나 상자 포장·보관</li> <li>◦ (활용) 축사갈래, 사료, 퇴비 등 제품 제조 원료로 납품</li> </ul>

**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제한 제외

□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된 폐기물

○ (근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8조

-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 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 수입 금지 가능

○ (내용)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4종

품목	시기
폐합성고분자화합물(HDPE, PC, ABS, PA, 폐전선은 제외)	'20.6월~
폐섬유(양모 80%이상 함유, PA 소재, 폐천연섬유는 제외)	'22.6월~
석탄재	'23.5월~
폐타이어(대형타이어, 철심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②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 폐기물 수입업자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 추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		수입업자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용지 제조업(17121)</li> <li>·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li> <li>·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li> <li>·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로 한다</li> <li>·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li> </ul>
개정	폐아이씨 트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li> <li>·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li> <li>· 합성섬유 제조업(20501)</li> <li>· 재생섬유 제조업(20502)</li> </ul>

< 아이씨 트레이(IC-Tray) 관련 사진 >



< 폐석재 관련 사진 >

